

#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

의안 번호	9-872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. 10. 13.  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가 외부기관에 출자·출연을 하고자 하면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어,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른 2026년 지방세발전기금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지방의회에 사전 동의안을 제출함

주요내용

- 2026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
  - 지방세발전기금 법정 적립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
- 출연기관 : 한국지방세연구원
  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1조에 의거 설립(2011년 4월 개원)
  -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·조사·교육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 지원
- 2026년도 출연 금액 : 56,050천원

( 단위 : 천원 )

① '24년 결산 지방세 징수액	'24년 결산 보통세 징수액			⑤ 26년 출연금 (②*1.0/10,000)
	② 소계	③ 현년도	④ 과년도	
560,534,251	<b>560,499,815</b>	545,199,048	15,300,767	<b>56,050</b>

- 안산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.0
- 출연방법 : 예산 편성 후 출연금 계좌 입금
- 출연시기 : 2026. 3. 31. 까지

세부내용 : 별 첨 【붙임 1】

방침결정문 : 별 첨 【붙임 2】

## 【붙임 1】

### □ 운영 개요

- 지원근거 : 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
- 필요성 : 지방세·재정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및 자치단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법정 출연금 지원 필요

#### 「지방세기본법」

제152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·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함

제152조 제3항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

####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

제94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일부(1만분의 1.2)를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해야 함.

※ '25년도 말 법령 개정으로 출연율 인하 예정(1만의 1.2 → 1만분의 1.0)

### □ 출연기관 일반 현황

- 기관명 : 한국지방세연구원
- 연 혁
  - 2011.04. 한국지방세연구원 개원(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)
  - 2012.01. '지방세포럼' 창간
  - 2015.01.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(OLTA) 신설
  - 2022.08. 지방세과표사업단 신설
- 주요사업
  - 지방세 법령정보 DB구축 및 소통창구 마련
  - 지방세 불복사건 자문 등 쟁송사무 지원
  - 지방세 연구과제 수행 및 연구보고서 발간
  - 수요자 중심 연구지원 (세수추계, 재정분석, 조례감면, 지방보조금 등)
  - 지방세 공무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 자치단체 협력 지원
  - 전국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비용(연 9억원) 지원

○ 2025년 안산시 협력 지원 사업 수행

- 연구과제명 : 2025년, 2026년 안산시 지방세 세입 전망
- 과제 수행 : 1차(2025.7.14.), 2차(2025.8.18.)

○ 인력 및 조직

- 정원 78명 / 현원 64명

구 분	계	원 장	관리직	연구직	전문직	사무직등
정 원	78명	1명	2명	50명	4명	21명
현 원	64명	1명	2명	34명	4명	23명
총인원	98명	정원외 인원 34명 (과건공무원12, 위촉연구원 및 행정원 등22)				

- 조직 : 4실(지방세제연구실, 지방세입연구실, 자치협력실, 경영지원실)  
1사업단(지방세과표사업단)

□ 출연금 현황

○ 소요 예산액: 56,050천원(전액 시비)

( 단위 : 천원 )

출연금	산출기초	지원기관(단체)	비 고
56,050	전전년도( '24년)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.0 (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) 560,499,815천원 × 1.0/10,000	한국지방세연구원	

○ 예산편성 세부내역

( 단위 : 천원 )

편성목	주요내용	2026년	2025년	비교증감
출연금	지방세 연구기능강화 발전기금	56,050	71,249	△15,199

- 전년대비 15,199천원 감소
- 보통세 결산액 감소(593,745,210천원 → 560,499,815천원)
- 출연비율 인하(1만분의 1.2 → 1만분의 1.0)

○ 2026년 출연금 산정내역

( 단위 : 천원 )

①'24년 결산 지방세 징수액	'24년 결산 보통세 징수액			⑤'26년 출연금 (②*1.0/10,000)
	②소계	③현년도	④과년도	
560,534,251	560,499,815	545,199,048	15,300,767	56,050

※ ②소계 : 보통세 징수액은 목적세(과년도 도시계획세, 사업소세) 제외 세액

- 출연방법 : 예산 편성 후 출연금 계좌 입금

- 출연시기 : 2026. 3. 31.까지

○ 안산시 지방세발전기금 연도별 출연 현황

( 단위 : 천원 )

출연연도	보통세 결산액	출연비율	출연금
2026	560,499,815	1만분의1.0	56,050
2025	593,745,210	1만분의1.2	71,249
2024	574,368,292		68,924
2023	533,555,774		64,027
2022	492,655,159		59,119
2021	474,987,028	1만분의1.3	61,748
2020	520,944,479	1만분의1.5	78,141

○ 증액 출연 사업내역 : 해당 없음

□ 기대효과

○ 지방세제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

○ 쟁송사건 지원, 디지털 기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운영,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교육 실시 등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

□ 부서 검토 의견

○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.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규정된 법정 출연금으로 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하는 것은 타당함.